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11. 26 선고 2014가합4517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별지1 원고 명단과 같음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

피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여상훈, 이재성

변론 종결2024. 9. 24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는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'인용 여부'란에 '일부 인용'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'부당이득액(원)'란 해당 부분 기재 각 돈 및 그 중 300,000원에 대하여는 2014. 12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%의,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. 11. 9.부터 2024. 11. 26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'인용 여부'란에 '기각'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위 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,
가.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'인용 여부'란에 '기각'으로 기재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,
나.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%는 위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'청구금액(원)'란 해당 부분 기재 각 돈 및 그 중 3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%,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재판장판사유아람

판사이영곤

판사이두현

별지